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0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도병두 의원

## 1. 제안이유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 및 동물복지 실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동물병원 지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2)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 3) 「수의사법」 제2조
- 4)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2. 5. ~ 2024. 2.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건의 진료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2.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수의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